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89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김한규·진선미·강선우

양부남 • 위성곤 • 이건태

박정현 • 박상혁 • 박홍배

문정복 • 박희승 • 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 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함(안 제2조제4호 등).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 히 함(안 제28조).
- 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조"라"를 "'제조등"이라"로,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물품등을 제조하는"을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조에"를 "제조등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물품등을 제조하기"를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를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조하는"을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제조된"을 "제조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제23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검토하여"를 "제40조에 따라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토"를 "조사"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호사"를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4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	
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	
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u>"제조"라</u> 한다)을 다른 중소	"제조등"이라
기업에 위탁하고, <u>제조를</u> 위	<u>제</u>
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	<u> 조등을</u>
로 <u>물품등을 제조하는</u> 거래를	<u>물품등의 제조등</u>
말한다.	<u>을 하는</u>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	12
탁거래에서 물품등의 <u>제조에</u>	<u>제조등</u>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	<u>에</u>
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	
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 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u>E n</u>	_
등의 제조등을 하기	_
	_
	-
 (최 전 (원레기 기호)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_
	-
<u>제외한다</u>	-
	_
	-
	-
	-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 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u>제</u>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⑧ (생 략)
-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 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

,
<u>.</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조등을
<u> </u>
 1 도 /최체코 가ბ)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u>제조등을</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u>제조</u>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 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 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u>제조를</u>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2. · 3. (생략)
-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

<u>제소</u>
<u> </u>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제조등을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조등을</u>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2. · 3. (현행과 같음)
4제조등을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 7. (생 략)

-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u>제조하는</u>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9. (생략)
- 10. 물품등의 <u>제조를</u> 의뢰한 후
 그 <u>제조된</u> 물품등에 대한 발
 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 11. ~ 14.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 (생략)
-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 / 정거래행위 개선) ① (생 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 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 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 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5. ~ 7. (현행과 같음) 8
<u>제조등을 하는</u>
9. (현행과 같음)
10제조등을
<u>제조등이 된</u>
11.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조등을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
정거래행위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략)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이 다른 중소기업에 <u>제조를</u> 위 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 ⑥ (생 략)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검토하여</u>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4
<u>제조등을</u> -
⑤·⑥ (현행과 같음)
∥28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40조에
따라 조사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 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 ⑤ 제3항에 따른 <u>검토</u> 및 시정 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 1. ~ 3. (생 략)
 -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5. (생략)
 - ② ~ ⑥ (생 략)

– .
④ (현행과 같음)
⑤ <u>조사</u>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
성 및 운영) ①
<u>30</u>
<u>명</u>
1. ~ 3. (현행과 같음)
4. <u>건축사, 기술사, 변호사</u>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